군산우체국 공고 제2023-21호

2023년도 제2회 군산우체국 특수지계약집배원 채용 공고

군산우체국에서 도서지역 우편물 집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특수지계약집배원(공무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군산우체국장

1.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직종	근무예정우체국	채용인원	담당업무내용
특수지계약집배원 (공무직)	군산우체국 (옥도면 말도리(명도))	1	- 우편물 배달 - 기타 관련 부대업무

2. 근로조건

가. 신분 및 근로계약 : 공무직 근로자(비공무원)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나. 보수 : 기본급(일급제 적용) + 수당

ㅇ 기타수당 : 직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명절보로금 등

ㅇ 실적수당 : 초과근무수당(시간외, 휴일), 상시출장여비 등

ㅇ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제도 등

다.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ㅇ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초과근무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

라. 휴가 : 연차 유급휴가, 공무 유급휴가, 특별 유급휴가 등

마. 집배업무 특성

ㅇ 대국민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마인드가 필요하며, 일평균 15여통 이상(최번기 50통 이상)의통상우편물과 2kg 내외(최고 30kg)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한 체력과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현재 18세(2005.12.31.이전 출생자)이상, 60세 미만

※ 선박운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우편물 배달 후 당일 귀가 가능한 자로 **명도 거주자 또는 채용 후 명도에 거주하며 우편물의 정시 배달이 가능한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나. 지역제한 : 공고일(2023.11.30.)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다. 책임감이 강하고 근면, 성실한 자

라. 차량 또는 이륜차에 의하여 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 소지자

마. 응시자격 제한

o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 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 불가

o 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위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시험방법

시험단계 / 채용분야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특수지계약집배원	서류전형	면접시험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 부적격 여부만을 판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ㅇ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ㅇ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에 의거 "면접시험평정표"의 평정(상·중·하) 결과를 집계하여 결정

ㅇ 평정결과(상·중·하)를 집계(개수)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단, 상의 개수가 같을 시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ㅇ 위원의 과반수가 아래와 같이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라.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면접시험 응시자는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시험 대기장 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통해 손 소독 및 체온측정 후 입실이 가능합니다.

* 대기 장소 입실 전 발열 체크 후 고열(37.5℃↑),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자가격리자의 경우 KF94 보건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예방 수칙을 따르지 않는 응시자는 입실 불가

6.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12.04.(월)~2023.12.07.(목), 09:00~18:00
(휴일, 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나. 접수처 : 군산우체국 지원과 (☎ 063-440-6232)

ㅇ 등기우편 주소 : (54025) 군산시 우체통거리1길 20(중앙로1가)
군산우체국 지원과 인사담당자 앞

ㅇ 전자우편 주소 : tax56001820@korea.kr

다. 접수방법

ㅇ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의 서식은 집배원채용안내홈페이지(postman.koreapost.go.kr), 군산우체국(http://www.koreapost.go.kr/jb/573/), 인사혁신처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의 채용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ㅇ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접수 가능

※ 우편접수 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익일특급 등기우편**)까지 인정

※ 전자우편은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ㅇ 접수된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교부(응시번호는 SMS 문자송부)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12.12.(화), 집배원 채용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군산우체국 홈페이지

나. 면접시험 : 2023.12.19.(화),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코로나 사전문진표를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한 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3.12.22.(금), 집배원 채용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군산우체국 홈페이지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퇴직,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1 서식 사용】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2,3 서식 사용】

다.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ㅇ 주소변동 이력 표시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발급

ㅇ 남자는 병적사항이 기록된 것,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라. 운전경력증명서 1부(차량 또는 이륜차를 이용하여 배달 시)

ㅇ 면허발급 이후 전체기간의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내역이 나타나야 하며, 운전경력 란에 면허취득일자는 반드시 표기 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

라.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5 서식 사용】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4 서식 사용】

바. 코로나 사전문진표 1부(면접시험 대상자 한)

※ 주민등록초본, 운전경력증명서는 공고일(2023.11.30.)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집배원 채용안내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군산우체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o 최종합격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군산우체국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o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산우체국 전자우편(tax56001820@korea.kr)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23.12.23.~2024.01.07.

라. 군산우체국은 응시자의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2023.01.12.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마. 특수지계약집배원은 비공무원이며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정년은 60세까지로 하며,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수습 중의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바. 특수지계약집배원 근무경력은 향후 우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됩니다.

사.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한 격리조치로 면접 참여가 어려운 자가 면접 전날 18시까지 채용주관부서에 신고(통지서 포함)할 경우 별도의 비대면 화상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우체국 지원과(☎ 063-440-6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